

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	--

: 2006. 1. .

:

1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·정리하고,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무쏘, 픽업, 코란도, 밴 등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차량에 포함하여 감면을 유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 적재면적이 2㎡미만인 화물자동차(무쏘, 픽업, 코란도, 밴 등)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 감면혜택 부여
- 나.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다.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신설로 별도감면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감면규정 삭제함
- 라.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“토지 및 건축물”을 “토지·지상건축물·주택”으로 함
- 마. 유통산업지원 감면 중 터미널 용지가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, “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”를 “창고용에”로 변경 함
- 바.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특법 제121의2조 제1항 제2호의 5, 6, 7목의 규정이 추가됨에 따른 조문 추가
- 사. 지방세법상 법인의 지방이전감면 중 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을 '05. 12. 31에서 규정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도 기한을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
- 자동차관리법
- 경상북도 재정과-22445(2005.12. 7)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

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

가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

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

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

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 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”를 각각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제1호중 “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”를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”로 하고, 동조제2항제1호중 “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”를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중 “토지 및 건축물”을 “토지·지상 건축물·주택”으로 한다.

제21조중 “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” 를 “창고용에” 로 한다.

제23조제1호중 “면제한다.” 를 “면제하고, 동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.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중 “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” 을 “취득하는” 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인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 2. ~ 4. (생략) ③ (생략) 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① (본문 생략) 다만, 공동주택을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. 1.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(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 2. ~ 3. (생략) ② (본문 생략) 다만, 공동주택을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	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① (본문 현행과 같음) -----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----- ----- ----- 1. -----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본문 현행과 같음) -----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----- ----- -----	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해당하는 자동차도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에 포함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--	--	--

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정한다. 1.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(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 2. ~ 3. (생략)	----- 1.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	
제15조(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	제15조 <삭 제> -----	지방세법시행령에서 분리과세로 규정함에 따른 감면규정 불필요
제16조(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 다만,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.	제16조(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토지·지상 건축물·주택 -----	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
제21조(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) 과세기준일 현재 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	제21조(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) ----- ----- 창고용에 -----	지방세법시행령에서 화물터미널을분리과세로 규정함에 따른 조문 수정
제23조(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 (생략) 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	제23조(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 (현행과 같음) 1. -----	조특법 규정이 추가 수정됨에 따른 조문 정비

[illegible]